

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999년 7월 28일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6월 23일,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7월 27일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-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고자 심사위원회 내부위원 범위를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6급이상으로 확대조정.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제한세율로 변경되고 소액부징수의 범위가 2,000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의 1,000원의 세액은 징세비용에도 못미치고 소액징수의 범위안에 있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 현실화를 위하여 5,000으로 인상 조정

-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 기재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으나, 타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이 조항을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의원의 위촉자격을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지방세관련 6급이상으로 확대(안제8조제2항)
-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실에 맞게 1,000원에서 5,000원으로 인상
- 건축물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에 관련법규와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것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보완
- 종합토지세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재산세 규정과 같이 개정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

-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으며, 위원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었음.
 - 우리군 평창군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지방세관련

공무원과 판사, 검사등 6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.

- 지방세법 제176조(세율)에 규정에 의거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장, 군수가 1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, 동법 제179조(소액부징수)에 의거 세액이 2,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못하도록 되어 있음.
- 지방세법 32조(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) 및 제79조(신고의무)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신축, 증축, 개축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음.

■ 종합 검토결과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중 현직 지방세관련 공무원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심사시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법등 별문제점이 없으며,
- 주민세에 대한 집행부의 원가분석액은 3,838원이며 강원도 18개시군 살펴보면 춘천, 원주, 강릉, 삼척은 현재 세액보다 2배 (시 3,600원, 군 2,000원)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, 시지역중 동해, 속초는 4,000원, 태백은 5,000원으로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으며, 군지역은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하여 군간 협의가 이루어져 5,000원으로 결정되거나 입법예고중임, 따라서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8.1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의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가분석, 시군간의 형평성, 물가상승률등을 고려

하여 세액을 의결해야 할 것임..

-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, 토지 신고의무는 건축법, 지적법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부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첨 부 :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1부